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80호 2013년 6월 14일(금)

고 시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..... 2

공 고

○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10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6 월 14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명칭 : 속초시 조양동 데이드림개발(주) 주택건설사업
2. 사업시행자
가.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: 데이드림개발(주) 대표이사 임영빈
나. 주 소 :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38번지 2층
3. 사업위치 : 속초시 조양동 900번지 외38필지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 업 내 용	사 업 비	비 고
분양주택	○ 사업면적 : 17,598.m ² ○ 대지면적 : 16,360.m ² ○ 건축연면적 : 48,193.79m ² ○ 건설규모 : 아파트 15층 이하 6개동 444세대 외 부대·복리 시설	81,000,000천원	

5. 사업시행기간 : 2013. 07 ~ 2014. 11.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
◦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: <붙임1>

◦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: <붙임2>

7.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(☎033-639-24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.

■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설	조양동 92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	조양동 923번지 일원	-	증)17,598	17,598	

◦결정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 설	24	조양동 923번지 일원	17,598	◦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 증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2. 지구단위계획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제3종일반주거지역	17,598	-	17,598	100%	

2) 용도지구 결정조서

가) 고도지구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고도제한 내용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16	온정리 지구	최 고 고 도지구	조양동	지반고로부터 18m 이하	13,613 (373)	1996.8.12 (강원도고시 제1996-149)	3종일반 주거지역

주. ()는 구역내 면적임

나) 보존지구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지구제한 내용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1	선 사 유 적 보 존 지 구	문 화 자 원 보 존 지 구	조양동 1529 번지 일원	-	1,140,733 (17,598)	2007.11.2 (강원도고시 제2007-236 호)	지정 문화 재 보호구역

주. ()는 구역내 면적임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198	8	국지 도로	232	조양동 933답	조양동 1072임	일반 도로	-	00.10.20 (강원도고시 제2000-222호)	
변경	소로	2	198	8	국지 도로	107	조양동 933답	조양동 1072임	일반 도로	-	-	구역외
기정	소로	2	199	8	국지 도로	226	조양동 933답	조양동 1078전	일반 도로	-	00.10.20 (강원도고시 제2000-222호)	
변경	소로	2	199	8	국지 도로	98	조양동 933답	조양동 1078전	일반 도로	-	-	구역외
기정	소로	2	214	8	국지 도로	222 (151)	조양동 920답	조 양 동 1540-4도	일반 도로	-	05.7.22 (속초시고시 제2005-59호)	

주. ()는 구역내 연장임

◦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2-198	소로2-198	연장 축소 -연장:232→107m(감125m)	◦공동주택부지 편입에 따른 노선 단축
소로2-199	소로2-199	연장 축소 -연장:226→98m(감128m)	◦공동주택부지 편입에 따른 노선 단축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 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-	1BL	16,360	조양동 923번지 일원	16,360	공동주택용지

라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-	1BL	용 도	◦지정용도 - 공동주택,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◦불허용도 -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-
		건폐율	◦26% 이하	-
		용적률	◦230% 이하	-
		높 이	◦15층 이하	-

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: 게재생략

[붙임2]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I.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◦위 치 : 속초시 조양동 90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◦종 류 : 조양동 92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
◦명 칭 : 도시계획도로[소로2-214호선] 개설공사

3. 사업시행규모

◦규 모 : 폭원(B)=8m, 연장(L)=151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◦법인명 : 데이드림개발주식회사

◦소재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38, 2층

◦대표자 : 임영빈

◦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경남아너스빌 206동 1602호

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

◦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동시 신청

II.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◦위 치 : 속초시 조양동 90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◦종 류 : 조양동 92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
◦명 칭 : 도시계획도로[소로2-214호선] 개설공사

3. 면적 또는 규모

◦면 적 : 1,643㎡ (도로용지 1,238㎡, 법면용지 405㎡)

◦규 모 : 폭원(B)=8m, 연장(L)=151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법인명 : 데이드림개발주식회사
- 소재지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38, 2층
- 대표자 : 임영빈
- 주 소 :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경남아너스빌 206동 1602호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인가일 ~ 2015년 7월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- 소로2-214호선 수용·사용 토지조서

번호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권		비고
						성 명	주 소	
합 계				55,658	1,643			
1	조양동	901	전	827	217	진규준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00	
2	조양동	927	전	1,484	248	김성주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923	
3	조양동	산138	임	4,567	545	정만섭	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1-9, 301호	
4	조양동	1540-4	도	47,788	343	속초시	-	
5	조양동	산142-5	임	298	14	김성주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923	
6	조양동	산142-7	임	694	276	김성주	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923	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14호)사업 무상귀속 조서(토지)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목	공 부 면 적 (㎡)	편 입 면 적(㎡)			비 고
					계	소2-214	옹벽	
합 계				55,658	1,643	1,238	405	
1	조양동	901	전	827	217	180	37	
2	조양동	927	전	1,484	248	235	13	
3	조양동	1540-4	도	47,788	343	256	87	
4	조양동	산138	임	4,567	545	382	163	
5	조양동	산142-5	임	298	14	14	—	
6	조양동	산142-7	임	694	276	171	105	

-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14호)사업 무상귀속 조서(시설물)

연번	시 설 물	규 격	단 위	수 량	비 고
1	절토부 옹벽	H=1.0~5.0	m2	1095.75	판넬식옹벽
2	우수관	D450	M	153.5	1호맨홀
3	우수맨홀	D900	EA	9.0	흡관
4	집수정	600x600	EA	5.0	현장타설
5	집수정 연결관	D300	M	21.0	PE이중벽관
6	빗물받이	300x900	EA	17.0	현장타설
7	빗물받이 연결관	D300	M	143.5	PE이중벽관
8	벤치플룸관	300C	M	154.0	제품

「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3년 6월 14일

속 초 시 장

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그간 민간부문에서 추진해 온 교류관계를 감안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외 자매도시별 소위원회 위주의 활동으로 대표성 저해
⇒ 국내·외 모든 교류에 중점을 둔 위원회 기능 미비
- 따라서, 조례 일부의 개정을 통해 국내·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수를 개정코자 함.
(안 제5조)
 - － “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”을 “20인 이내의 위원”으로 개정.
 - － 시의원 “3명”을 “1명”으로 개정.
- 회의 개최시기를 개정코자 함. (안 제8조)
 - － 정기회 회의 개최를 “연 2회로 상·하반기 각 1회씩 소집”에서 “연 1회 개최”로 개정
-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코자 함. (안 제9조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(참조 기획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— 우)217-030 /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담당
(전화 033-639-2112, 팩스 033-639-2106, E-mail : neo4423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이메일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(☎033-639-21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5조제1항중 “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”를 “20인 이내의 위원으로”로 하고, 제2항중 “3명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제4항중 “기획협력담당이 되며”를 “교류업무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연 2회로 상·하반기 각 1회씩 소집”을 “연 1회 개최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, 감사 1인을 포함한 <u>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②위원은 시의원 <u>3명</u>을 포함하여 국내·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<u>기획협력담당</u>이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. 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<u>연 2회로 상·하반기 각 1회씩</u> 소집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제9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</u> 위원회에 국내·외 자매도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<u>4인 이상 6인 이하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	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, 감사 1인을 포함한 <u>20인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 ②위원은 시의원 <u>1명</u>을 포함하여 국내·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. ③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<u>교류업무 담당주사</u>가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. 제8조(회의) ①(생략) ②정기회는 <u>연 1회 개최</u>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제9조 <삭제>